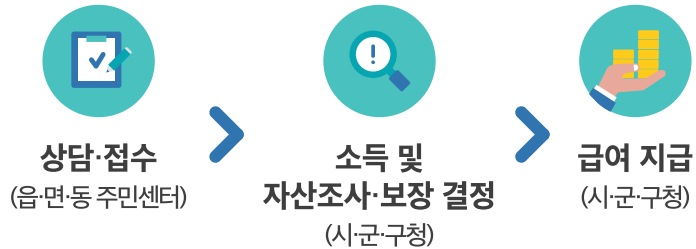


○ 신청절차



○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